

#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 5,534호 1998. 4. 10.

## 주요 골자

- 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외국기자재에 대하여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단일 공제율을 적용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함(법 제5조·제10조·제17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및 제98조).
- 나. 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등 각종 조합인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상하고, 기타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우대세율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 법인과 같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
- 다.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여 단일화함(법 제63조).
- 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치도록 하는 최저한세의 세율을 일반 법인인 경우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소기업인 경우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인상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법 제118조).

〈법제처 제공〉

## 개 정 이 유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비용”을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5조의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도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속연도>	<공제비율>
3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0
12년 이상	100분의 30

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100분의 15를”를 “100분의 10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을 “100분의 3”으로 하고, 동법제2항중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로 한다.

제51조제2항중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25”을 “100분의 28”로 한다

제60조제3항중 “공공법인”을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으로, “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를 제24조“로, 제46조·제48조”를 “제46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지정

고시일(사업지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액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5조제1항중 본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매매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허용한다.

제87호의 제목중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증권시장안정기금등”으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을 “투자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증권투자신탁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취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에 한하며 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취득금액(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16조중 “제11조·제16조·제2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제29조·제48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12(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를 “제14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로,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규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 개정법률 규칙 제5조”를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3조·제20조”를 제13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6조,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18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8조”를 “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로,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3조의3·제20조”를 “제13조의 3”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97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제97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5조(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 및 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를 “제55조(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22조 본문중 “제10조·제2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제11조·제20조”를 제11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8조·제23조·제28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60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16조·제118조(제16조·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22조 및 제123조(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장기술인력소득세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제16조·제17조·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예)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관한 적용예)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최저한액에 관한 적용예) ①제118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8조제1항제1호(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하는 부분에 한한다)·제4호 및 제2항제1호(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 개정법률은 부칙 제5조를 삭제하는 부분에 한

한다)·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11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지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연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회보